

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

● 사업목적

고용유지 위기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*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50% 범위 내 6개월간 지원

* (使)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(勞) 임금감소가 발생하는 고용유지조치 수용

● 지원요건

-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(재고량 증가, 매출 감소 등)가
-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
- ③고용을 유지하고,
- ④임금이 감소한 경우

* 중복지원 제외 : 유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,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

● 지원내용

지원기간

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(최대 6개월)

* 지원금 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)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(소급지원불가)

지원금액

임금감소분의 50%(1인당 月50만원 한도,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)

* 1개월 단위로 지급(매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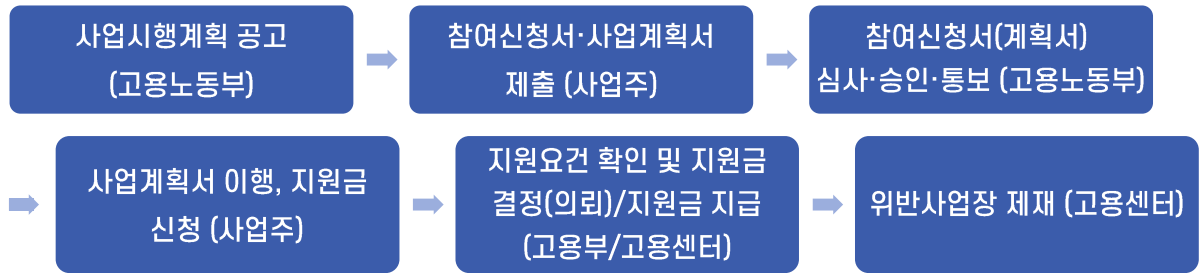
● 지원절차

공모방식

「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및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계획서」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
(우편·팩스·이메일 제출도 가능)

- 공고일부터 '21.06.30.까지 매월 공모를 진행하고 익월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장 선정 후 지급

● 사업추진체계

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: www.moel.go.kr
- 부산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: 051-850-6335
051-850-6441
- 부산동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: 051-559-6618
- 부산북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: 051-309-1564